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-000호

「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」을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- '08년부터 자본적정성, 자산건전성 세부기준을 운영 중이나 경영실태평가 등 중요사항 누락 및 법적 지위가 없는 지침으로 운영
- 최근 자동차 사고피해자 공제금 지급 증가 및 미흡한 경영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추세에 따라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증대
- 「여객법자동차 운수사업법」(법률 제17976호, '21.9.24 시행) 제68조의2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(법률 제18054호, '21.10.14 시행) 제51조의11에 따라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지도 및 재무건전성을 관리하도록 감독기준을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(안 제3조)
- 나. 공제조합의 약관 작성 시 공제계약자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도록 함(안 제4조~제5조)
- 다. 공제요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토록 기준 마련(안 제6조~제7조)
- 라.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에게 공제조합이 제출한 약관 및 공제분담금의 요율서에 대하여 관련법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(안 제10조~제12조)
- 마. 회계연도말 결산결과에 따라 기본분담금을 3개월 이내 조정하도록 조정 원칙, 산출방법, 조정률을 결정하도록 함(안 제13조~제17조)
- 바. 공제조합의 자산 운용 시 안정성·유동성·수익성이 확보되도록 자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규정(안 제18조~제20조)
- 사. 공제조합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재무제표의 작성, 결산, 지급준비금, 표준손해액 산출, 미경과분담금,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마련(안 제21조~제32조)
- 아.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세부 합산·차감항목을 정하고 분기별·지부별로 준수하도록 자본의 적정성 유지 도모(안 제33조~제36조)
- 자. 차주 채무상환능력을 감안 보유자산 건전성을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자산건전성 확보(안 제37조~제38조)

- 차. 채권의 매도 및 후순위 채무의 조기 상환 등 적정한 유동성 유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(안 제39조~제40조)
- 카. 공제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5단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)
- 타.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(0~100%) 등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·요구·명령을 통해 경영개선 조치하도록 함(안 제44조~제48조)
- 파.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채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을 결산일 3개월 이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(안 제49조~제51조)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자동차운영보험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제출자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
- 2) 팩스 : (044) 201 - 5587
- 3) 전자우편(이메일) : demi2114@korea.kr, pkm0903@korea.kr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(전화 : (044) 201-4871, 487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